



회원정보 부정사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심 사건

2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성15년(네) 제3361호
판결 일자	2003. 12. 25.	판결 결과	항소인 일부 승소
원고 (피항소인)	1. 메디컬사이언스 주식회사(구 상호 알아차리는 모임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아트커넥션		
피고 (항소인)	A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회원정보, 상품 공급업체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손해배상, 품질오인표시, 허위사실의 고지·유포		

02 사건 개요

피항소인 메디컬사이언스 주식회사(구 상호 "알아차리는 모임 주식회사". 2000년 10월 25일에 현상호로 변경. 이하, "피항소인 메디컬") 건강기구 수출입 및 판매 및 건강식품 등의 수출입 및 판매를 회원조직형방문판매사업을 통해 업으로 하며,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트커넥션(이하 "피항소인 아트")은 건강기구 및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항소인 두 회사는 사무소는 같은 장소에 있고, 양자 대표자도 같으며, 사무도 엄격한 구별이 없다. 항소인은 피항소인 메디컬이 주재하는 고객회원조직 "알아차리는 모임"(이하"알아차리는 모임")의 회원이던 자이다.

피상소인들이 항소인 및 월드•윈도우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및 피항소인들의 전 직원으로, 항소인과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와 C(이하, "원심피고 3명")가 영업 비밀인 "알아차리는 모임"의 회원정보를 무단 취득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공개·사용하였으며, 동 회원들에게 상품 구입 권유하고 동 회원들에게 피항소인들 및 그 대표자D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유포, 회원 가로채기, 영업방해 등을 했음을 이유로, 각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고, 상기 각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이다.

원심에서는 피항소인의 원심피고 3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동피고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했다. 그러나 항소인은 원심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호출을 받았음에도,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항소인들이 주장한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여, 항소인에 대한 청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인용되었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피 고 (항소인)

원고상품2와는 품질이 다른 건강식품인 피고상품2에 대해, 피항소인들의 원고상품2와 같은 성분표시를 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하였다.

회원들에게, 피항소인들 및 그 대표자D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유포하였다.

①알아차리는 모임의 회원에게 신문 기사를 제재로 "알아차리는 모임 피해자 모임 결성을 알림"이라는 제목의 피문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회원의 불안과 동요를 부추겨 가로챘다.

②시부야의 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피항소인 메디컬의 신문기사나 비방문서를 지참하고, 피항소인 메디컬의 구인 알선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피항소인 메디컬의 영업방해를 했다.

③알아차리는 모임의 회원에게 D가 불구속 기소된 보도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FAX나 전화로 배포하고, 영업방해를 했다.

④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신이 주재하는 "융화의 모임"에 입회를 시작하여, 알아차리는 모임의 회원을 가로채고, 피고회사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해 피항소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피해를 입었다.

①에 대해서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고, 유포한 적이 없다.

②에 대해서는 시부야의 직업안정소에 간적조차 없다.

③에 대해서도 신문기사 등을 FAX등으로 발송한 적은 전혀 없다.

④에 대해서는 "알아차리는 모임"의 회원을 가로챈 일은 없다.

04 판결 요지

당 법원은 피항소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알아차리는 모임"의 회원정보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급업체인 KGB사 및 BIO사, 리신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KGB사 및 BIO사에 관한 정보는 비공지라 할 수 없다.

피항소인들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인 원고상품2와 피고회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인 피고상품2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회사가 그 상품의 성분 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항소인이 피항소인들이 주장하는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항소인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가 그 고객이 항소인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피항소인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항소인이 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주재하는 "융화의 모임"에 입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수단을 기초로 하는 사실주장이 필요하나 위법한 수단에 의해 가로챘다는 사실주장이 피항소인들에 의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항소인들의 항소인에 대한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항소인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정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05 Key Point

회원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 비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회원을 가로채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